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인삼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, 인삼재배 문화의 계승·발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(법률 제19490호, 2023.6.20. 공포, 2023.12.21.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(안 제6조 및 별표 2 개정)

-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,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·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200만원, 3차 위반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33조제1항”을 “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에 카목과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한 경우	법 제33조 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·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 제2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인삼제품류의 종류) <u>법 제1</u> <u>2조제4항</u> 전단에서 “인삼제품 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 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. 1. ~ 7. (생 략)	제3조(인삼제품류의 종류) <u>법 제1</u> <u>2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3</u> <u>3조제1항</u>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제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3</u> <u>3조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239